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18가합11347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전 문

원 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성

담당변호사 송준호

피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현종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3. 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B 대 208.7㎡에 관하여 별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재건축주택조합 등 9개 조합으로 구성된 연합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1992년경 서울 성동구 D 일대 토지 135필지 22,163.94㎡(이후 138필지 24,055.94㎡로 증가하였다)를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로 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에 따라 주택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나. 피고는 1993. 11. 9. 이 사건 주택조합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기로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1993. 12. 15.부터 1995. 2. 15.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5. 4. 25. 이 사건 주택조합에 대해 민영주택건설사업의 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단지 내 설치 예정인 탁아소는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탁아소 부속토지(200㎡)를 분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귀 조합의 의견과 같이 우리 구에 기부채납할 것’ 등을 이행조건으로 부과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조합은 1997. 6.경 원고에게 ‘탁아소 부지 60.5평, 건물 72평 등을 기부채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7. 8. 20.경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탁아소 건물 및 그 부지를 인도받았고, 1997. 9. 26. 탁아소 부지가 속해 있는 서울 성동구 E 대 574㎡(이하 ‘환지 전 E 토지’라 한다) 중 탁아소 부지로 사용되는 면적에 상응하는 574분의 213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98. 1. 24. 탁아소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사업부지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7.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 성동구 F 대 23,612.2㎡(아파트 택지), 서울 성동구 B 대 208.7㎡[탁아소 부지, 이하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라 한다, 이는 환지 전 E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 필지(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가 환지된 것이다], 서울 성동구 G 대 8.5㎡(공지)로 환지되었다. 이에 따라 1997. 11. 21.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마쳐져 있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별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등이 이기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8. 8. 이 사건 주택조합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탁아소 부지를 기부채납받은 1997. 6. 30.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9962호), 이에 대하여 2022. 7.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2. 11. 3.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1997. 6. 3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 1) 탁아소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는 이 사건 주택조합이 이 사건 환지처분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환지 전 E 토지 중 일부로 기부채납하였고, 환지 전 E 토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목적물도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잘못 이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상사 대여금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 3)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시효 완성 전에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존재하였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

1)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이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환지 이전에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주택조합 등의 소유 토지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기된 것이고, 원고가 기부채납받은 환지 전 E 토지로부터는 아무런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이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이 아닌 이 사건 주택조합 등 제3자의 공유지분에 설정된 것이므로, 원고가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2) 피고는 1998. 1. 17. 이 사건 주택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일부승소 판결이 2004. 3. 6.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2007. 10. 15. 이 사건 주택조합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를 신청하여 2007. 10. 16.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2010. 2. 26.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의 권리관계

1) 원고의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 취득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어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존재하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환지에 그대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므로 소유자를 달리 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필지의 소유권은 한 필지에 그대로 이행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들은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라 환지 전 E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로 환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조합 등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소유자들과 함께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이하 원고의 지분을 ‘이 사건 원고 지분’이라 하고, 그 외의 지분을 ‘이 사건 제3자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 사건 환지처분에 의한 환지는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1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합동환지에 해당한다. 합동환지가 있게 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은 환지된 토지를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공유하므로, 시행자가 합동환지의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 간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비율을 환지등기촉탁서에 표시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환지등기를 완료한 후 그 지분비율을 공유자 지분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참조).

비록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는 환지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소유자들의 공유지분을 특정하는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으나,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라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이기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전의 목적물인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마쳐져 있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기한 것인 점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 각 일부 특정 토지에 마쳐져 있다가 이기되었다는 점 등이 등기부등본상 분명하게 나타나므로, 개별 공유지분의 특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은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 당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토지에 상응하는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의 공유지분’에 한하여 미치고,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 당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았던 토지에 상응하는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의 공유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¹⁾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1) 법률상 원인 없이 이기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주택조합이 원고에게 탁아소 부지로서 환지 전 E 토지 중 일부를 기부채납하였고, 이 사건 환지 후 토지가 탁아소 부지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환지 전 E 토지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목적물이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지 후 토지가 원고의 단독소유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라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게 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라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 일부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대로 이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은 당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았던 환지 전 E 토지 중 일부에 상응하는 이 사건 원고 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라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이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잘못 이기되었다거나 이 사건 원고 지분을 위법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담보채무의 시효소멸 여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는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까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원고 지분과 무관한 이 사건 제3자 지분 중 일부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원시취득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조합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22. 11. 3.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1997. 6. 3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등 참조), 종전에 이 사건 환지 후 토지 중
이 사건 제3자 지분의 일부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 완, 판사 곽새롬, 판사 한성민

별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록

등기부 용구 순번	등기번호	채권최고액	기타사항
1 (전1)	서울동부지방법원 1993. 12. 15. 접수 제65743호	금19,500,000,000원	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2 (전2)	서울동부지방법원 1993. 12. 23. 접수 제67412호	금19,500,000,000원	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3 (전3)	서울동부지방법원 1993. 12. 23. 접수 제67412호	금19,500,000,000원	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4 (전4)	서울동부지방법원 1993. 12. 23. 접수 제67412호	금19,500,000,000원	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5 (전4)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1. 31. 접수 제5718호	금19,500,000,000원	연대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6 (전5)	서울동부지방법원 1993. 12. 27. 접수 제69065호	금19,500,000,000원	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7 (전6)	서울동부지방법원 1993. 12. 27. 접수 제69065호	금19,500,000,000원	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8 (전7)	서울동부지방법원 1993. 12. 27. 접수 제69065호	금19,500,000,000원	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9 (전7)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1. 11. 접수 제1210호	금19,500,000,000원	연대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10 (전8)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1. 31. 접수 제5718호	금19,500,000,000원	연대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11 (전9)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4. 15. 접수 제27400호	금19,500,000,000원	연대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12 (전10)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4. 15. 접수 제27400호	금19,500,000,000원	연대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13 (전11)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4. 22. 접수 제29349호	금19,500,000,000원	연대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14 (전12)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6. 30. 접수 제46673호	금19,500,000,000원	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15 (전13)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8. 3. 접수 제53743호	금19,500,000,000원	연대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16 (전14)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9. 13. 접수 제61490호	금19,500,000,000원	연대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17 (전15)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9. 29. 접수 제63989호	금19,500,000,000원	연대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18 (전17)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1. 31. 접수 제5721호	금45,000,000원	연대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19 (전19)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7. 29. 접수 제53021호	금52,500,000원	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20 (전20)	서울동부지방법원 1993. 12. 27. 접수 제69065호	금19,500,000,000원	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21 (전24)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1. 7. 접수 제602호	금150,000,000원	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22 (전25)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1. 11. 접수 제1214호	금45,000,000원	연대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23 (전34)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9. 29. 접수 제63973호	금45,000,000원	채무자 Q
24 (전35)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9. 29. 접수 제63975호	금45,000,000원	채무자 R
25 (전36)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1. 11. 접수 제1218호	금45,000,000원	연대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26 (전38)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10. 6. 접수 제65182호	금45,000,000원	채무자 S
27(전39)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10. 6. 접수 제65198호	금45,000,000원	채무자 T

28 (전40)	서울동부지방법원 1993. 12. 27. 접수 제69065호	금19,500,000,000원	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29 (전41)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10. 12. 접수 제66438호	금60,000,000원	채무자 U
30 (전42)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10. 24. 접수 제68704호	금45,000,000원	채무자 V
31 (전44)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4. 22. 접수 제29350호	금45,000,000원	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32 (전44)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10. 11. 접수 제66140호	금37,500,000원	채무자 W
33 (전45)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4. 15. 접수 제27400호	금19,500,000,000원	연대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34 (전48)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10. 11. 접수 제66129호	금45,000,000원	채무자 X
35 (전49)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1. 31. 접수 제5722호	금45,000,000원	연대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36 (전51)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9. 29. 접수 제63977호	금45,000,000원	채무자 Y
37 (전53)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1. 11. 접수 제1219호	금45,000,000원	연대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38 (전54)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10. 6. 접수 제65188호	금45,000,000원	채무자 Z
39 (전55)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9. 29. 접수 제63980호	금67,500,000원	채무자 AA

40 (전59)	서울동부지방법원 1993. 12. 31. 접수 제70807호	금600,000,000원	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41 (전60)	서울동부지방법원 1995. 2. 15. 접수 제5987호	금52,000,000원	채무자 AB
42 (전64)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1. 31. 접수 제5718호	금19,500,000,000원	연대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43 (전64)	서울동부지방법원 1994. 9. 13. 접수 제61490호	금19,500,000,000원	연대채무자 H직장주택조합 I지역주택조합 J지역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직장주택조합 M직장주택조합 N직장주택조합 O직장주택조합 P지역주택조합

1)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51 판결은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 이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